第105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 10月 19日(木) 11時02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管理計劃 變更計劃(案)
5. 昌信3住居環境改善地區 新規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1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1面
4.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管理計劃 變更計劃(案) (鐘路區廳長 提出) 1面
5. 昌信3住居環境改善地區 新規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鐘路區廳長 提出) 1面

(11時02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4.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管理計劃 變更計劃(案) (鐘路區廳長 提出)

5. 昌信 3住居環境改善地區 新規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鐘路區廳長 提出)

(11時04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管理計劃 變更計劃(案), 의사일정 제5항 昌信3住居環境改善地區 新規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市民行政委員會 李東奎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李東奎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李東奎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과 金正大 副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

저, 안건의 조문 하나하나를 매우 심도있게 장시간 동안 심사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 실시를 위하여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0년 1월 13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서 문화복지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동장의 의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은 동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문화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문화복지위원회를 두며, (안) 제17조제1항에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17조제4항에서 관할구역 구의원은 위원회의 상임고문으로 하며, (안) 제17조제5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센터의 운영과 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보다더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던 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조례의 명칭 변경과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지역주민대표인 우리 구의원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2일과 10월 17일 이 건과 관련하여 의원 간담회를 장시간 개최하여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한 본 건의 심사과정에서 축소된 동사무소의 기능과 아울러 동장이 운영하는 센터는 생활체육,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주로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명칭을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문화복지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의원의 참여 하에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할지역 구의원을 위원회의 상임고문으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에서 상임고문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제18조제3항에 「위원장은 제16조 각호의 사항 중 중요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상임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21조제3항에 「상임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안) 제18조제1항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21조제1항제4호에 주민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 해촉사유인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기타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을 경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사무, 인력, 기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조례 5개를 일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동기능전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종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 등 4개의 조례에서 동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동기능전환의 확

대시행을 위해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福祉文化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民行政委員會)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李東奎 市民行政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福同 財務建設委員長!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金福同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 金福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석으로 제법 한기까지 느끼게 하는 이때에 이 자리를 함께 한 모든 분에게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이나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징수 근거규정을 종전에는 건설부령에 정하던 것을 모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이를 추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수수료를 법인의 경우 2만원, 개인인 경우 8,000원,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3,000원,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 수수료 2만원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중개업등록수수료 등은 특정인에게 특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조세와는 달리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므로 처리비용을 건교부와 우리 구가 세밀하게 원가 계산하여 이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책정하였고, 또 타구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한 타당한 수수료 책정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제9항 '가'호와 '나'호는 자구표현이 상위법과 다르게 표현되어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신고와 법인인 중개업자 신고를 상위법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개인·법인으로 수정 의결하여 상위법과 조례간의 자구의 통일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99년 11월 19일 의결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 불법주차 및 지역주민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교동 66번지 외 3건에 대해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신설도로보다 기존의 도로가 대부분인 우리 구의 입지여건상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는 주차난 해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공영주차장 확보는 구의 필요보다는 토지소유주의 매도 의사에 의거 확보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지역 및 주변 여건과 주차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필요한 부지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것과 또 동간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취득과정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고자 전 위원들이 매우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에 임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창신3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3주거환경개선지구는 창신2동 610-23번지 일대로서 대지면적이 약 2,789.7㎡이고 건물은 26동에 40세대를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2000년 5월 18일 창신지구와 창신2지구 사이에서 제외된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2000년 7월 22일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 포함 추가로 서울시에 지정 의뢰한 결과 2000년 8월 4일 신청지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신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토록 한 회시에 따라 2000년 8월 24일 신규 지구지정(안)을 입안하여 2000년 8월 24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지역은 '60년부터 '82년 초 사이에 건축된 단층건물로 이루어진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건물상태가 불량하고 일반적인 대지면적 최소한도 90㎡에 미달되는 필지가 전체지역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입도로가 폭 2~3m에 불과하여 극히 혼잡하고 차량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도로의 확장 및 정비가 시급하고 상·하수도 등 공급처리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쓰레기처리 등 제반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또한 대부분이 과소필지로 현행 건축법으로는 거주민의 영세성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이 오히려 개악이 되어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최선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管理計劃 變更計劃(案) 審査報告書

昌信3住居環境改善地區 新規指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財務建設委員會)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金福同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安載弘議員!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安載弘議員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7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으로 구입하는 토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본 의원이 빠진 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5월 25일날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종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소위 투자사업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사를 거쳤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시민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17조제5항에 대해서 좀 한번 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5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설립 취지가 행자부의 기본준칙(안)에 따르면 소위 제정 이유에도 나와있는 목적에 나와있는 대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운영조례는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자치센터의 기능을, 물론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하지만 복지증진 소위 프로그램이나 구민 여가 문화 프로그램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의 기본준칙(안)에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당연히 그 지역의 자치의 문제는 해당 구의원에게 위원장의 역할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나 이 조례가 처음 시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적으로 조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17조제5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 의원이 볼 때 동장이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의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以煥 또 다른 의원 질의를 일괄해서 먼저 받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李炯述議員!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議員 李炯述議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安載弘議員이 공감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재무건설 소속 의원이라서 시민행정위원회 물론 심도있게 다루어서 넘어온 이 부분을 더 이상 깊은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지방의회가 의원이 근 10여 년을 지금 3대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이 현재 법으로 지방의회 우리 기초의원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명칭은 주민문화복지센터로 했지만 일단 행자부에서 내려온 처음 시안이 주민자치센터 이 운영에 지역 구의원들은 아마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자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해놓고 여기에 동장을 통해서 임명권을 모든 위원을 동장이 임명을 해서 선출하면 그 동네에 지방의회 의원 이외에 한 조직이 새로 생긴다고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넘어온 부분을 보면 제18조제3항에 「위원은 제16조 각호의 사항 중 중요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상임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때에 따라 가지고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위원은 전부 동장이 임명한 사람을 상임고문이라고 해놓고 상임고문을 우스운 꼴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3항에 「위원은 제16조 각호의 사항 중 중요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상임고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을 때 당연히 중요사항을 구의원에게 자문을 구하지 거기에 동장이 임명한 구의원하고 상관없는 위원을 뽑아놓고 그 위원들이 구의원한테 안해도 되겠다 이러한 조례를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다는 부분은 본 의원이 조금 약하다고 해서 당연히 그 부분에다 '구해야 한다'라고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두번째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제17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원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회기 중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의원들에게 어느 범주까지 공무원에 준한 것으로 혜택을 주는지 그 부분도 행정관리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이 부분을 보면 이 조례의 제17조제5항 중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이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 위원장을 하지 말라, 각 지역의 의원을 견제하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以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질의해주신 安載弘議員님과 李炯述議員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각 상임위원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으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나오셔서 安載弘議員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吳鍾錫입니다. 먼저 저희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安載弘議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부지는 수시로 매도의사가 있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충분한 사전계획이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점이 수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투자심사 10억 이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 심의는 지난 10월 12일날 이행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투자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실무위원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의견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行政管理局 金賢植 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安載弘議員님과 李炯述議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17조제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수정하신 제18조제3항에 「위원은 제16조 각항의 사항 중 중요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상임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범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행정관리국장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언급을 해 올리겠습니다. 정보, 통신, 교통의 비약적인 발전과 급격한 주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서 순수한 행정수요보다는 건강, 여가, 취미 등 문화적 욕구가 더 확대되고 복지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주민이 스스로 문화복지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공동 관심사를 함께 해결하는 자치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첨단정보 수집 및 이웃간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사랑방과 같은 기능을 함께 하게 됩니다. 주민문화복지 위원을 각 분야에서 선출해서 지역의 문화복지활동에 대한 협의 심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복지센터는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설치하는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동 실정에 따라서 동민의 집이라든지 문화센터, 복지센터 등 다양한 이름을 현재 붙이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복지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센터는 동장의 집행 그리고 관할구역의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동장이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양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법 취지가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칭합니다. 또한 현재 공직자윤리법 등에 규정된 대로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에 대

해서 2회에 걸쳐서 간담회와 전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맞춰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바르게 고치고 자구 하나하나까지 고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以煥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議長!」하는 議員 있음)

安載弘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安載弘議員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는 재무건설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에 수긍을 하고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 오해냐면 기본적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이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 찬성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올린 조례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는데 다만 행자부의 기본준칙에 기본취지는 여기 이 조례의 목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조례 목적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제3조 원칙을 보면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및 설치의 기본취지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을 조장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조례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동장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위원회는 무엇이냐,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자문기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조례 전체가 어차피 주민자치기능을 활발하게 전개해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이 조례의 기본목적에는 그냥 존치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차라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지 말고 차라리 임명을 하자는 얘깁니다. 차라리 임명을 하게 되면 동장이 지금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주민문화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고 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용을 제한하거나 변상을 요구할 수 있고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운영 결과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동장에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차라리 동장이 임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설사 자치센터의 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그 위원장은 임명하자는 겁니다. 누가 구청장이 임명하든 동장이 임명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어차피 각 지역의 문제라고 한다면 동장이 임명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17조 제5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구의원은 위원장이 안되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만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제로 하자 이것이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以煥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동장의 심의 또는 자문기관입니다. 구의 기능을 담당하는 구의 집행기관 또는 자문기관의 위원장이 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위원장을 동장이 임명할 경우에는 지금 모든 행정이 자치행정을 부르짖는 마당에서 관선체제가 되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의요구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議長 金以煥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議長!」하는 議員 있음)

洪承台議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承台議員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까 李炯述議員님께서 제18조제3항에 대해서 「위원은 제16조 각호의 사항 중 중요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상임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임고문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자구를 고쳐서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다른 구의회에서도 작년부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재산등록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 공무원에 준해야 된다지만 사실 우리가 재산등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행자부에다 의장단협의회에서 행자부에도 했습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으로 봐서도 이번에 자치센터를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많은 고려를 해서 했지만 제가 보면 타구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통과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심도있게 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상임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자구를 고쳐주기 바라고, 사실은 자치센터 이 자체는 물론 행자부에서 나왔지만 좀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게 너무 심도있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以煥 洪承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李東奎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議員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李東奎議員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동료의원님 질의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몇 가지만 부연설명을 할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安載弘議員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임명할 경우 임명쪽으로 갈 경우 이것은 문화복지위원회의 자율성이 배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율성이라는 것은 투표, 호선에 의해서 선출이 된 위원장이 나와줘야 그 위원장의 자율성이 보장되는데 임명을 하면 자율성이 배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관치행정에 불과하다 이것은 관치행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들이 상의한 내용이고 논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좋으냐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넘어가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저희들에게 재의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이 법의 검토를 여러 가지로 거쳐 가지고 재의요구가 들어오지 않는 관점에서 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관치행정에 부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나가자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또 하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 나오시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나와서 그런 질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이죠 저는 그 의원님은 진짜 문제있는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以煥 李東奎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安載弘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安載弘議員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기본적인 질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라고 또 논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우리 李東奎 委員長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李東奎 委員長이 답변을 하시기를 관치기능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만일에 호선하지 않고 놔두면 관치기능이 강화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 조례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민문화복지위원회는 명칭은 위원회 같지만 이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기능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의기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심의하고 모든 내용은 심지어 전 위원들하고 동장이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뜻으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면 호선해야죠. 그렇게 호선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장은 소위 지방자치 제도가 요구하는 위원장이 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올라온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냐면 복지기능의 강화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기능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의 자치기능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차라리 임명을 해버리자 그러면 그 기능 자체가 더 순순히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우려를 해서 이것을 그대로 뒀다면 이것은 더 문제입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의견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겁니까? 의회는 의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설사 그것이 재의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재의가 들어와서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의회가 발전하고 자치구가 발전하는 것이지 재의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면 관치가 되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본 의원은 수정안을 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以煥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安載弘議員!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7조제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이 조항은 어차피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주민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문화기능을 강화하는 쪽이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의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議長 金以煥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安載弘議員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議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安載弘議員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李炯述議員!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議員 李炯述議員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18조제3항 신설 부분에 「위원은 제16조 각호의 사항 중 중요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상임고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부분 말미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로 본 의원은 자구 수정을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以煥 李炯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계속 나가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李炯述議員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議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李炯述議員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洪起瑞 委員長!

○洪起瑞議員 洪起瑞議員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사안이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전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도 이제 종결이 안 나서 우리가 또다시 시민행정위원회로 넘겨서 그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1안과 2안으로 우리가 토의했던 사안을 가지고 시민행정위원회에는 1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安載弘議員님께서 질의하신 임명한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임명한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조문까지 보니까 그것이 재의가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고 또다시 선출한다고 우리가 자구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8조제3항을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임고문을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다'가 그것은 재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미 대법원에 들어와있는 것을 조문을 봐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3선의원이신 우리 千相旭議員께서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다했었습니다마는 재의가 와서는 안되겠다, 특히 금년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20억이라는 돈이 묻히게 되면 우리 구민들로부터 또 뜨거운 눈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구 자구 하나하나를 우리가 재의가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당시도 간담회 석상에서 이루어진 사항 하나하나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무려 장시간 한 2시간 여 시간을 거쳐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가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그대로 좀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洪起瑞 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끝이 없으니까 이것을 좀 충분한 상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2分 會議中止)

(12時28分 繼續開議)

○議長 金以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李炯述議員과 安載弘議員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李炯述議員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議員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반대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참석의원 14명 중에서 李炯述議員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1분, 반대 8분, 기권 5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李炯述議員님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安載弘議員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安載弘議員의 수정동의(안)에 찬

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반대하시는 의원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擧手表決)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표, 반대 10표, 기권 3표로 安載弘議員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신3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時38分 閉會)

○出席議員 18人

洪承台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千相旭	安載弘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金福同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崔康洵	金以煥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副區廳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